

# Muan Web Contents

2021년 09월 28일 21시 56분



# 목차

목차	2
무안시승격	3
필요성	3
자치분권시대의 광역행정도시에 어울리는 위상 필요	3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주민 및 기업의 만족도 제고	3
시 승격의 요건(지방자치법 제7조)	3
시 승격의 특별사례	3
추진전략	3
1단계	3
2단계	4
3단계	4
무안시 승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4
긍정적 측면	4
부정적 측면	5
관련법규 개정 및 대안	5
지방자치법령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5
신구조문 대비표	5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개정안	5
신설 내용	5
시 설치에 따른 특별지원법안	6
필요성	6
무안시에 적용되는 특례법의 내용	6
입주기업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6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6
이주자에 대한 지원	6

## 필요성

### 자치분권시대의 광역행정도시에 어울리는 위상 필요

- 전남도청 등 22개 광역기관 소재

###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주민 및 기업의 만족도 제고

-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 대응
- 시승격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 시 승격의 요건(지방자치법 제7조)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인 군
- 동시에,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군
-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 이상

### 시 승격의 특별사례

- 충남 계룡시 : 면적 60.7km<sup>2</sup>와 인구 31,000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로 승격
-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수, 도시기능 등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행정복합도시로서 시 설치(2012. 7.)

## 추진전략

### 제1단계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개정추진

### 제2단계

무안시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후 신청

### 제3단계

무안시 설치법 및 특례법 입법

### 제4단계

무안시 개칭

## 1단계

1. 무안시 설치추진기본계획수립
2. 시설추진 및 민간위원회 구성
3.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개정(의원발의)
4. 국회소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법제사법위원회
7. 국회본회의

## 2단계

1. 시 설치 기획단 구성
2. 시설계획수립
3. 개정지방자치법에의한시설추진
4. 무안시설치 및 무안시특례법안 작성및의견수렴
5. 시설법률안에대한 지방의회의견청취
6. 시설치에대한 주민투표

## 3단계

1. 시설법률안및특례법안행안부제출
2. 행안부검토
3. 법률요건 실태확인
4. 법률안확정
5. 법제처심사
6. 국무회의심의.의결
7. 법안국회제출
8. 국회행안위심의의결
9. 국회법사의심의의결
10. 국회본회의법률안상정
11. 국회본회의심의.의결
12. 설치법.특례법공포
13. 준비계획시달
14. 시설치준비단구성
15. 시설치준비
16. 무안시개청식

## 무안시 승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긍정적 측면

- 정부지원 확대로 지역개발 가속화
-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행정조직 확대 개편으로 대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기업해외통상증대 및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기준 확대 및 예산 지원의 상향 조정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개발 가능
- 유동인구의 증가,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교육·복지·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기존도로 확충과 도로망 구축으로 자족도시 기능 강화

(<http://www.muang.go.kr>)

- 도시기능 확대에 따른 상권조성용이
- 산업경제 확충으로 고용효과 증대

### 부정적 측면

- 주민의 조세부담증대(洞 지역)

- 개인균등할 주민세
- 면허세액 증가
- 환경개선 부담금 요율 조정

- 농촌지역 특혜 감소(洞 지역)

- 고교수업료 인상
- 농어촌 고교생 특례입학 제외 ※시설치 후 3년간 계속 혜택
-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 관련법규 개정 및 대안

### 지방자치법령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도청소재지 도농 복합시 설치요건 추가 신설 (안 제7조 제2항5호)
- 도청소재지 군 시승격 가능 조항 신설 :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예외규정인 “군사무소 소재지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를 인용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소재지 군 시승격 가능 조항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p> <p>1.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li> <li>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li> <li>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i> <li>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li> <li>5. 신설</li> </ul>	<p>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p> <p>1. 현행과 같음</p> <p>2. 1~4호 현행과 같음</p> <p>5.도(道)청소재지인 군(郡)</p>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개정안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5호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을 신설한다.

#### 신설 내용

(<http://www.muang.go.kr>)

제4항 (신설)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은 군을 시로 승격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받게 되는 행·재정상 기대 효과 주민부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행·재정상의 기대 효과

- 도시적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양적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 도시 인프라의 구축시간 단축
- 국가 및 도로부터 지원확대

■ 행·재정상의 부담

- 각종 지방세의 부담액 증가
- 공무원수의 증가
- 각종 부담금의 증가 등

## 시 설치에 따른 특별지원법안

### 필요성

- 도시사무소소재지인 무안군을 무안시로 승격한다해도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열악한 도시여건을 개선할 수 없으며 지역의 중심지가 될 수 없음
- 중앙정부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여하는 특별지원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도청소재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도 혁신도시와 같은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함

### 무안시에 적용되는 특례법의 내용

도청소재지이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준용

### 입주기업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전과 남악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부담금을 감면 가능
- 세제 및 자금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악신도시 지구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가능
-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악신도시 지구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가능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 특례 인정

### 이주자에 대한 지원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남악신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청직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방법에 특례 인정

MUAN

# Web Contents

 무안군